

건 설 부

단지 432.4 - 781

1968. 1. 18

수신 서울특별시

제목 서울도시계획 경인지구 및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인가

서도구 432.4 - 9 (68. 1. 5)로 신청한 서울 도시계획 경인지구 및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인가함.

1968년 1월 18일

건설부장관

다 음

경인지구

1. 사업명 : 서울도시계획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학곡동, 신월동, 신정동 각 1부.
3. 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시행면적 : 2,126,787평
5. 시행기간 : 1968년 인가일로부터 1971. 12. 31 까지
6. 지시사항 : 가. 계획 변경시는 변경 인가를 득후 후 시행할것.  
나. 고속도로에 수반되는 공사는 실시 설계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할것

다.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간지선은 입체교차를 고려하고 자연 지형을 감안하여 위치를 조정 선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토록 할것.

라. 안양천으로부터 북동 409의 290번지 까지의 토지는 분리 시행토록할것.

영 동 지 구

- 1. 사 업 명 : 서울 도시계획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양재동.
- 3. 시 행 장 : 서울특별시장
- 4. 시행면적 : 3,126,229평
- 5. 시행기간 : 1968년 도입가입으로부터 1971. 12. 31 까지
- 6. 지시 사항 : 가. 계획 변경시는 변경 인가를 득한후 시행할것  
 나. 고속도로에 수반되는 공사는 공사 실시 설계 승인을 득한후 집행할것  
 다. 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간지선은 입체 교차를 고려하고 자연 지형을 감안하여 위치를 조정 선정하고 공사비를 절감토록할것.  
 마. 국고보조 590,000,000원은 자체 자금으로서 중당 사업 시행토록 할것.

상기 2개 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도면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공람에 공할것. 끝 .

( 공 고 안 )

건설부 공고 제 44호

서울도시계획 경인지구 및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 인가 하시기 이를 공고 한다.

1968년 1월 18일

건설부장관

다 음

경인 지구

1. 사업명 : 서울 도시계획 경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목동, 학곡동, 신월동, 신정동각 4부.
3. 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시행면적 : 2,126,787평
5. 시행기간 : 1968년 인가일로부터 1971. 12. 31 까지

영동 지구

1. 사업명 : 서울도시계획 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2. 시행지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 반포동, 잠원동, 서초동  
양재동.
3. 시행자 : 서울특별시
4. 시행면적 : 3,126,229평
5. 시행기간 : 1968년 인가일로부터 1971. 12. 31 까지

상기 2개 지구의 사업에 대하여 관계 도면을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고 급계인  
의 공람에 공한다. 끝.